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3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이수진·추미애·김준혁

서미화 · 황정아 · 권향엽

장종태 · 송옥주 · 신장식

문정복 · 정일영 · 임미애

김문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.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, 중·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, 교사,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,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있겠음.

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(딥페이크)을 제작·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,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,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형법」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추행, 간음 또는 성 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307조(명예훼손), 제308조(사자의 명예훼손) 및 제311조(모욕)의 죄

제14조의2제1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, "5천만원"을 "7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5년"을 "7년"으로, "5천만원"을 "7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7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성폭	제2조(정의) ①
력범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 3의2. 「형법」 제2편제33장 명</u>
	예에 관한 죄 중 추행, 간음
	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
	목적으로 범한 제307조(명예
	훼손), 제308조(사자의 명예훼
	<u>손) 및 제311조(모욕)의 죄</u>
4. • 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	등) ①
사람의 얼굴・신체 또는 음성	
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・영상	
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	
서 "영상물등"이라 한다)을 영	
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	
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	
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	
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	
서 "편집등"이라 한다)한 자는	

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5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 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"편집물등"이라 한다) 또는 복 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<u>7년</u>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신 설>

<u> 7년7천만원</u>
②
<u>7년</u>
<u>7천만원</u>
·.
③
<u>10년</u>
.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
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・구입
•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
하의 벌금에 처한다.